

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4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남평우)

가. 제안이유

○ 시정추진에 있어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의 위원 참여가 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국장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함(안 제2조제1항)

○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(안 제2조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4급 이상이면 구청장도 참석합니까?</p> <p>○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란 무슨 뜻입니까?</p>	<p>○ 사안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○ 민간인을 뜻합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05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안이유

- 시정추진에 있어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의 위원 참여가 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국장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

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함(안 제2조제1항)
-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(안 제2조제3항)

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“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”를 “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”로 한다.

동조제3항 “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”를 “위원은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별로” 한다.

동조제4항 “위촉위원”은 “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<u>부위원장</u>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.....<u>부위원장</u>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은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별로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④부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